

2025년 쌀 생산량(예상량)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

통계청 원주사무소에서는 「2025년 쌀 생산량(예상량)조사」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8. 20.

통계청 원주사무소장

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

지역	모집 구분	모집 인원	계약 방법	계약 기간	수당	비고
원주, 황성	도급 조사원	1명	도급 계약	(교육) 2025. 9. 11. (1일)	80,240원	
				(조사) 2025. 9. 12. ~ 2025. 10. 30. (기간 중 11일)	도급금액	

※ 본조사 수당(도급금액): 조사완료 실적급

- 수당 단가: 1일 부여 업무량 완료 기준 80,240원
- 기간 내 부여된 업무량 완료 실적에 따른 해당분의 도급금액 지급
- 담당 업무량에 따라 일수 및 수당이 변동될 수 있음

※ 최종합격자는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(거부 시 합격 취소 가능)

※ 위 내용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

담당업무

모집구분	주요 담당업무
도급조사원 (도급계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업무 지원· 예상량 낱알 수 조사 보조· 현장조사 표본곡 운반 및 벼 탈곡, 건조, 현미 조제 보조 등

3

모집방법

1차 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응모자의 모집 제한 여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2차 전형(서류평가,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자기소개서 내용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합격자 결정

4

응시 자격요건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
5

전형일정
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9. 4.(목) 16:00 이후
- 공고: 통계청 채용정보(<https://kostat.go.kr/ijob>) > 합격·공지 > 강원지방통계지청
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

지원서 접수

접수기간: 2025. 8. 20.(수) ~ 2025. 8. 27.(수) 18:00

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연락처
통계청 원주사무소	최덕진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, 나라키움원주통합청사 3층 (반곡동 1858-5)	전화: 033-769-3723 팩스: 033-732-0632 이메일: cdjksy@korea.kr

접수방법 : 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 접수

○ 방문 접수는 평일 09:00~18:00(토·일·공휴일 제외) 내에 접수 가능

○ 관련 증빙서류는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가능(도착 여부는 본인이 확인)

○ 접수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7

제출서류

응시원서 1부(붙임1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붙임2)

자기소개서 1부(붙임3)

〈해당자 추가 제출서류〉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붙임4,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제출)

※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시는 경우,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확인 가능합니다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와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-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
※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※ 관련서류 제출기간은 지원서 접수기간과 동일

※ 지원자가 제출한 응모서류의 보관기간은 모집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(붙임5) 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모집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- 응시원서 등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“불량”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-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,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-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
 - ① 계약서 작성 전(교육 미이수): 수당 미지급
 - ② 계약서 작성 후(교육 이수): 교육수당 지급
 - ③ 조사수행 중: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
- 전시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- 문의: 통계청 원주사무소 채용·모집담당자 최덕진(033-769-3723)

【붙임1】

도급조사원 응시원서

업무명	2025년 쌀 생산량(예상량)조사	분야	도급조사원	응시번호	
성명 (한글)			성별		
			생년월일		
연락처	휴대폰번호				
	주소	(도로명주소) (지번주소)			
	e-mail				
일반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
	~				
	~				
통계청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
	~				
	~				
자격사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
	전산 관련				
	기타	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2025년 월 일 성명 : (서명)					

주 1」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모집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2」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모집이 취소될 수 있음

붙임 : 관련 증명서류(자격증 등)

【붙임2】

(모집 전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통계청은 도급조사원의 모집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15조, 제17조, 제22조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
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휴대전화, 전자우편)	모집절차 진행, 본인확인, 이종계약 관리,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	미계약자	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따라 모집 종료 후 180일까지
		계약자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집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2025년 월 일

성명 :

(서명)

통계청 원주사무소장 귀하

【붙임3】

자 기 소 개 서

조사명	2025년 쌀 생산량(예상량)조사	분 야	도급조사원
성 명		전 화	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300자 내외로 작성(15point, 굴림체)
(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)

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

(지원동기 및 포부 등)

-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청 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

【붙임5】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통계청 원주사무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